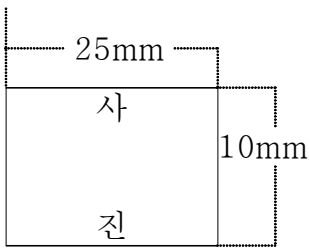


[별지 제34호서식] <개정 1973.7.7>
(앞 면)

검사공무원증 제 호 직 명 성 명 [그림 생략] 위의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19 . . . 부터 19 . . . 까지	 60cm
교 통 부 장 관 [인]	

(뒷 면)

1. 이 증명은 기명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2. 이 증명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3. 이 증명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
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
4.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발행처에
반납하여야 한다.